

(기 관 명)

문서번호

시행일

받음

제 목 사후관리이행보증금(사전적립금) 반환 통지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51조제4항·제5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·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(사전적립금)의 반환금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아 래 -

예치금액	반환결정금액	반환금 지급장소(은행 및 계좌번호)

붙임: 반환금액 산출근거

시·도지사
유역(지방)환경청장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